

## 근질권설정승낙서

당사는 위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 이에 당사는 아래 신탁부동산 수익권(증서번호 20185040-001 호)에 대하여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를 질권자로 하는 귀사의 수익권근질권설정을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승낙합니다.

1. 본 근질권의 목적이 되는 신탁수익권은 근질권설정자가 신탁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신탁수익권이며, 질권자의 채권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.
2. 신탁부동산에 대해 원인무효, 사해신탁, 취득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신탁계약의 수익권 역시 상실되어 설정계약서상 근질권의 목적인 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근질권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근질권자와 근질권설정자는 “수탁자”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
3. 설정계약서에 의한 근질권은 “수탁자”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, 담보제공 할 수 없다.
4. 근질권자는 설정계약서상 질권의 목적인 수익권의 발생 원인이 신탁계약서에 따른 것임과 동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수익권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“수탁자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근질권설정자의 수익권의 범위를 넘어서 청구할 수 없다.

※본 동의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근질권설정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받는다.

위탁자	신탁부동산
	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47외 1필지 양도마을 제107동

2019 년 04 월 11 일

승낙자 **부제자산신탁주식회사** 대표이사 이 창 하  
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, 20층 (삼성동)



확정일자제 367호

